

2021 학년도

선택과 집중으로 자존감을 높여가는

반을림 학교교육과정 안내



세상을 밝게, 생각은 깊게 꿈을 크게 키우는 즐거운 배움터



전주진북초등학교

<https://school.jbedu.kr/jb-jinbuk/>



목 차

- I. 학교 상징 및 교가 1
- II. 학교 현황 3
- III. 2021 전북·전주교육 추진방향 4
- IV. 2021학년도 전북 반올림 교육과정 운영 계획 6
 - 1. 전북 반올림교육 Vision & Brand 6
 - 2. 2021학년도 학사일정 7
 - 3. 교육과정 학년별 운영시간 9
 - 4. 교과 평가 계획 10
 - 5. 출결규정 11
 - 6.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13
 - 7. 돌봄교실 운영 계획 15
 - 8. 학부모회 조직 운영 계획 16

<학부모 연수 자료>

-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안내 18
- 2. 교육활동 침해예방 학부모 연수 19
-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연수 21
- 4. 학부모 대상 생활인성 교육 22
- 5. 사이버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예방교육 연수 31
- 6. 보건교육 학부모 연수 32
- 7. 저작권 교육 연수 41
- 8. 정보통신 윤리교육 연수 42



I. 학교 상징 및 교가

<p>우리학교 마크</p>	<p>돋아나는 어린 잎처럼 꿈이 자라고 더불어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교양있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갖춰 걸어나아가는 진북 어린이의 모습을 형상화 하였습니다.</p>
	
<p>우리 학교 나무 (은행나무)</p>	<p>은행나무는 교육을 상징합니다. 은행나무는 오래 살며 수형이 크고 아름답습니다. 병충해가 거의 없으며 넓고 짙은 그늘을 줍니다. 은행나무처럼 건강하고 기품있게 자라길 바랍니다.</p>
	
<p>우리 학교 꽃 (개나리)</p>	<p>개나리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개나리는 봄소식을 전하는 꽃으로 양지바른 곳에서 자라며 꽃말은 희망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개나리처럼 희망을 갖고 미래를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랍니다.</p>
	
<p>우리 학교 새 (까치)</p>	<p>까치는 만남과 환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까치와 같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p>
	

교 가

작사: 김해강

작곡: 천길량

비 사 별 흙 - 러 내 리 단 물
 진 북 의 눈 무 른 하 늘 - 에

추 천 의 햇 빛 은 춤 을 추 - 다.
 종 소 리 힘 차 게 을 려 퍼 진 다.

부 꾸 른 새 회 망 의 천 지 는 무 르 녹 아
 손 과 손 마 주 잡 고 배 우 머 로 래 하 띵

기쁨 과 사 랑 으 로 보 음 자 리 필 찻 네
 찬 란 한 웃 음 으 로 꽃 - 발 을 이 루 네

오 - - - 빛 나 거 라 꽃 피 는 동 산

오 - - - 즐 기 워 라 꽃 피 는 진 북

II. 학교현황

1. 학교연혁

연	월	일	연 혁 개 요
1961	04	03	전주진북초등학교 개교
1999	07	01	체험학습 도지정 시범학교
2014	03	01	교육복지사업 연계학교 지정
2015	03	01	원도심 활성화 사업 선정
2015	12	31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전라북도교육청)
2016	03	01	혁신학교 선정(전라북도교육청)
2016	12	09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교육부)
2017	~	2019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운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03	01	제23대 홍해숙 교장 부임
2021	02	05	제55회 졸업식(졸업생 48명, 총 19,783명)
2021	03	01	10학급 편성

2. 학생현황

(2021.3.1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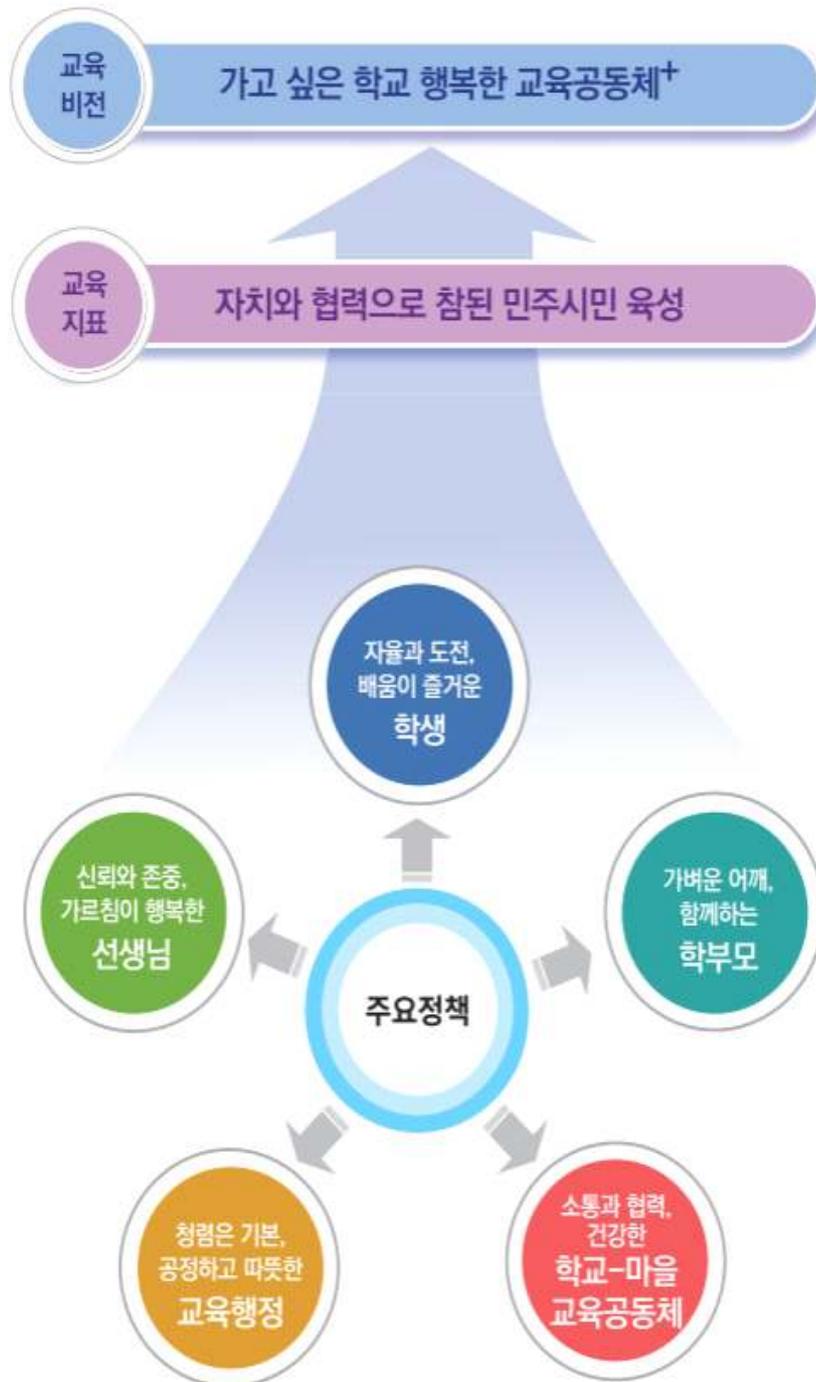
학 년		1	2	3	4	5	6	계
학 급 수		2	1	2	1	2	2	10
학생수	남	19	8	21	14	28	20	110
	여	15	11	16	11	19	13	85
	계	34	19	37	25	47	33	195

3. 교직원 현황

구분 성별	교 원							행 정										합계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소계	행정실장	주무관	조리종사원	시설관리원	운동부지도자	교무실무사	방과후행정실무사	돌봄전담사	배움터지원봉사자	기타		소계
남	·	·	·	1	·	·	1	1	·	1	1	1	·	·	·	1	1	6	7
여	1	1	2	9	1	1	15	·	2	2	·	·	1	1	2	·	1	9	24
계	1	1	2	10	1	1	16	1	2	3	1	1	1	2	2	1	2	15	31

Ⅲ. 2021 전북·전주교육 주요정책 및 추진방향

1. 전북교육 주요정책



2. 전주교육 실천방향



IV. 2021학년도 진북 반올림 교육과정 운영 계획

1. 진북 반올림교육 Vision & Brand

Vision

세상을 밝게 **생각**은 깊게
꿈을 크게 키우는 **즐거운 배움터**

Brand

선택과 **집중**교육으로
자존감을 높여가는



2. 학사일정

2021학년도 1학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 월	삼일절	1 목	전북해양수련 (5학년) 인권교육 (6학년)	1 토		1 화	음악졸년기(1-1)	1 목		1 일	
2 화	시업식 입학식	2 금	인권교육 (5학년)	2 일		2 수	클나무 (전학년)	2 금		2 월	
3 수		3 토	개교기념일	3 월	학생다모임(전학년)	3 목	19현장체험학습 (2학년) 패드민턴 (6학년)	3 토		3 화	
4 목		4 일		4 화		4 금	무용 (1,2학년)	4 일		4 수	
5 금		5 월	학생다모임(전학년)	5 수	어린이날	5 토		5 월	교육과정워크숍 학생다모임(전학년)	5 목	
6 토		6 화	음악졸년기(3학년)	6 목		6 일	현충일	6 화		6 금	
7 일		7 수		7 금	무용 (1,2학년)	7 월	통일교육주간 학생다모임(전학년) 평화통일교육 (3,4학년)	7 수	클나무 (전학년)	7 토	
8 월	어울림서포시 (전학년) 학급다모임조직 (4,5,6학년)	8 목	패드민턴 (4학년)	8 토		8 화	음악졸년기(1-1) 평화통일교육 (5,6학년)	8 목		8 일	
9 화		9 금		9 일		9 수	클나무 (전학년)	9 금		9 월	
10 수	학생다모임(전학년)	10 토		10 월		10 목	패드민턴 (6학년)	10 토		10 화	
11 목		11 일		11 화	음악졸년기(2학년)	11 금	무용 (1,2학년)	11 일		11 수	
12 금		12 월		12 수	클나무(전학년)	12 토		12 월	전교다모임조직 (4,5,6학년)	12 목	
13 토		13 화	음악졸년기(3학년)	13 목	패드민턴(5학년)	13 일		13 화		13 금	
14 일		14 수	클나무 (전학년)	14 금	무용 (1,2학년)	14 월		14 수	클나무 (전학년)	14 토	
15 월		15 목	패드민턴 (4학년)	15 토		15 화	음악졸년기(1-2)	15 목		15 일	광복절
16 화		16 금	무용 (1,2학년)	16 일		16 수		16 금		16 월	
17 수		17 토		17 월	다꿈이해교육주간	17 목	현장체험학습 (6학년)	17 토		17 화	
18 목	교육과정설명회	18 일		18 화	119 현장체험학습 (5학년) 음악졸년기(2학년)	18 금	현장체험학습(1학년) 현장체험학습(3학년) 현장체험학습(4학년)	18 일		18 수	
19 금		19 월	장해이해교육주간	19 수	부처님오신날	19 토		19 월		19 목	
20 토		20 화		20 목	패드민턴 (5학년)	20 일		20 화		20 금	여름개학식
21 일		21 수	클나무 (전학년)	21 금	무용 (1,2학년)	21 월		21 수	여름방학식	21 토	
22 월		22 목	학부모공개수업 (1-3학년)	22 토		22 화	음악졸년기(1-2)	22 목		22 일	
23 화	소변검사 2,3,5,6학년	23 금	무용 (1,2학년) 학부모공개수업 (전담 및 보강)	23 일		23 수		23 금		23 월	2학기 시작
24 수		24 토		24 월	수영교육(3,4학년)	24 목	현장체험학습 (6학년)	24 토		24 화	
25 목		25 일		25 화	집밖속 수영교육(3,4학년)	25 금	무용 (1,2학년)	25 일		25 수	
26 금		26 월	과학체험주간 독도사랑주간	26 수	영어체험센터(5학년) 수영교육(3,4학년)	26 토		26 월		26 목	
27 토		27 화	학부모공개수업 (4-6학년)	27 목	영어체험센터(5학년) 수영교육 (3,4학년)	27 일		27 화		27 금	
28 일		28 수	클나무 (전학년)	28 금	무용 (1,2학년) 수영교육(3,4학년)	28 월		28 수		28 토	
29 월	학부모상담주간 인권교육(1,3학년)	29 목	교통안전교육 (1,2학년)	29 토		29 화		29 목		29 일	
30 화	인권교육(1,3학년)	30 금	무용 (1,2학년)	30 일		30 수	클나무 (전학년)	30 금		30 월	
31 수	인권교육(2,4학년)			31 월	흡연예방교육주간 나라사랑주간			31 토		31 화	
수업일	22		22		19		22		15		8



2021학년도 2학기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	수	클나무 (전학년)	1	금	무용 (1,2학년)	1	월	학생다모임(전학년)	1	토	신정	1	화	설날
2	목		2	토		2	화	음악줄넘기 (1-1)	2	일		2	수	설연휴
3	금	무용 (1,2학년)	3	일	개천절	3	수	클나무 (전학년)	3	월		3	목	
4	토		4	월	학생다모임(전학년)	4	목	패드민턴 (6학년)	4	토		4	금	
5	일		5	화	음악줄넘기 (2학년)	5	금	무용 (1,2학년)	5	일		5	토	
6	월	학부모상담주간 학생다모임(전학년)	6	수	클나무 (전학년)	6	토		6	월	학생다모임(전학년)	6	목	6 일
7	화	음악줄넘기 (3학년)	7	목	패드민턴 (5학년)	7	일		7	화		7	월	
8	수	클나무 (전학년)	8	금	무용 (1,2학년)	8	월	스포츠클럽주간	8	수		8	화	겨울개학식
9	목	패드민턴 (4학년)	9	토	한글날	9	화	음악줄넘기 (1-1)	9	목		9	수	
10	금	무용 (1,2학년)	10	일		10	수		10	금	전교다모임조직 (3,4,5학년)	10	목	
11	토		11	월		11	목		11	토		11	금	중어시 졸업식
12	일		12	화	음악줄넘기 (2학년)	12	금	무용 (1,2학년)	12	일		12	토	
13	월		13	수	클나무 (전학년)	13	토		13	월		13	목	
14	화	음악줄넘기 (3학년)	14	목	패드민턴 (5학년)	14	일		14	화		14	월	
15	수	클나무 (전학년)	15	금	무용 (1,2학년)	15	월		15	수		15	화	
16	목	패드민턴 (4학년)	16	토		16	화	음악줄넘기 (1-2)	16	목		16	수	
17	금	무용 (1,2학년)	17	일		17	수	클나무 (전학년)	17	금		17	목	
18	토		18	월		18	목	패드민턴 (6학년)	18	토		18	금	
19	일		19	화		19	금	무용 (1,2학년)	19	일		19	토	
20	월	추석연휴	20	수	클나무 (전학년)	20	토		20	월		20	목	
21	화	추석	21	목		21	일		21	화		21	월	
22	수	추석연휴	22	금	애플데이	22	월		22	수		22	화	
23	목		23	토		23	화	집밖 음악줄넘기 (1-2)	23	목	겨울방학식	23	수	
24	금		24	일		24	수	클나무 (전학년)	24	금		24	목	
25	토		25	월		25	목		25	토	성탄절	25	금	
26	일		26	화		26	금		26	일		26	토	
27	월	독서체험주간	27	수	클나무 (전학년)	27	토		27	월		27	목	
28	화		28	목		28	일		28	화		28	월	
29	수	클나무 (전학년)	29	금	무용 (1,2학년)	29	월	교육과정위크숍주간	29	수		29	화	
30	목		30	토		30	화		30	목		30	수	
			31	일					31	금		31	목	설연휴
수업일	19		21		22		17		0		4			

* 수업일수 : 1학기 101일, 2학기 90일 계:191일

3. 교육과정 학년별 운영시간

[요일별 시간 운영]

학 년 \ 요 일	월	화	수	목	금	계
1학년	4교시	5교시	4교시	5교시	5교시	23
2학년	5교시	5교시	4교시	5교시	5교시	24
3학년	5교시	6교시	5교시	5교시	5교시	26
4학년	5교시	6교시	5교시	5교시	5교시	26
5학년	6교시	6교시	5교시	6교시	6교시	29
6학년	6교시	6교시	5교시	6교시	6교시	29

[수업 시정표]

시간	1~2학년	3~4학년	5~6학년
등교시간	8:40~8:50	8:35~8:45	8:30~8:40
아침열기	8:50~9:00	8:45~9:00	8:40~9:00
9:00~9:40(40분)	1교시	1교시	1교시
9:50~10:30(40분)	2교시	2교시	2교시
10:40~11:20(40분)	3교시	3교시	3교시
11:30~12:10(40분)	점심시간	4교시	4교시
12:10~12:50(40분)	4교시	점심시간	점심시간
12:50~13:30(40분)	5교시 1학년 (화, 목, 금) 2학년 (월, 화, 목, 금)	5교시	5교시
13:35~14:15(40분)	X	(화) 6교시	(월, 화, 목, 금) 6교시



4. 교과 평가 계획

가. 초등성장평가란?

참학력 신장을 위한 초등학교의 전복형 평가제도로써 ‘줄 세우기’ 평가가 아니라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그 과정의 의미 있는 배움이 삶 속에 연결되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 중심의 평가임.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교과외의 성취기준과 학교의 특성, 학생의 삶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수업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호기심과 질문이 있는 수업 속에서 과정 중심의 다양한 수행평가가 이루어짐.

나. 초등 성장평가제의 필요성과 전복교육청 추진 방향

기존 평가	→	초등 성장평가
서열·결과 중심 평가	지식보다 역량이 요구되는 교육 흐름의 변화로 평가의 변화 필요성 높아짐	결과만이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
획일화된 사고 강조		다양한 사고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강조
단순 암기 위주 평가		학생의 다양한 능력 평가
지식 전달을 위한 교사 중심 수업		배움과 성장을 위한 학생 중심 수업

다. 우리 학교에서는?

- 학년별·학급별로 평가 시기와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평가계획서를 학기별로 안내장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 평가 과목, 단원, 시기, 방법 등을 사전예고 합니다.
- 수학교과외의 경우 단원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 결과 안내 및 피드백을 위한 통지표를 제공합니다.
- 학부모 상담 주간을 통해 학생의 성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한 학기 동안의 학생별 평가 결과를 학기말에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5. 출결 규정 안내

가. 결석

1) 질병 결석

내용	제출서류	비고
• 질병으로 1~2일 결석 시	증빙서류(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담임교사에게 사전연락 필수
• 질병으로 3일 이상 결석 시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2) 출석인정 결석

구분	내용 및 제출서류		
법정전염병 으로 인한 결석	• 담임과의 연락 후 병명과 격리기간 등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제출 (법정전염병 목록은 학부모연수자료 6번 참고)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교중지 대상학생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외(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제 2021-17호 및 학부모연수자료 6번 참고)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등교중지학생 보호자 호가인서, 진료확인서 등
고위험군 학생	•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의사진단서, 학부모의견서
경조사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 가능일수)	• 결혼(형제, 자매, 부, 모)	~1일	-청첩장 또는 사망진단서 등 관련서류
	• 입양(학생 본인)	~20일	
	• 사망(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일	
	• 사망(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일	
	• 사망(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 사망(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교외체험 학습으로 인한 결석	• 계획서 제출: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 가능 일수: 국내, 국외 관계없이 30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가정체험학습 가능(연 총34일)		-교외체험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

•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①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에 해당하며,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②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③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1주일 이내 제출한다.
 -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으니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형제·자매가 교외체험학습을 함께 가는 경우, 체험학습 신청서를 참가자별로 각각 제출합니다.

3) 기타 결석

- 부모,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 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4)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는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6항의 학습기간
- 학교장 허가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

나. 지각, 조퇴, 결과 안내

- 1)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각각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6. 방과후학교 운영 안내

○ 운영 시간표

부 서	요 일	강사료	운 영 시 간					장 소																																			
	강 사		월	화	수	목	금																																				
독서 논술	월/수	29,000	①13:00~14:00 ②14:10~15:10 ③15:20~16:20		①13:00~14:00 ②14:10~15:10 ③15:20~16:20			후관 2층 독서논술실																																			
	박O주 010-4653-4089																																										
로봇 과학	월/수	29,000						①13:40~14:40 ②14:50~15:50 ③16:00~17:00		①13:40~14:40 ②14:50~15:50 ③16:00~17:00			후관 3층 로봇과학실																														
	김O정 010-2296-4735																																										
	월/수	29,000																																									
생활 영어	유O희 010-7592-3503																	후관 2층 영어실																									
	월/수	26,700																																									
컴퓨터	김O혜 010-9441-4404																	①13:40~14:40 ②14:50~15:50 ③16:00~17:00		①13:10~14:10 ②14:20~15:20 ③15:30~16:30 ④16:40~17:40			후관1층 컴퓨터실																				
	월/수	29,000																																									
	피아노	서O주 010-2302-8120																											별관3층 피아노실														
화/목		29,000																																									
바이올린	오O라 010-5544-7807																																후관3층 바이올린실										
	화/목	29,000																																									
창의 미술	변O선 010-2685-1758																																					후관3층 창의미술실					
	화/목	29,000																																									
창의 수학	하O주 010-4140-2746																																										후관2층 창의수학실
	화/금	29,000																																									
배드 민턴	신O래 010-9653-5865																																										강 당
	화/금	29,000																																									
주산 암산	한O림 010-2771-2420																																										후관2층 주산암산실
	화/금	29,000																																									
한자	소O숙 010-7392-4430																																										본관 2층 한자실
	화/금	29,000																																									

★ 방과후 문의전화: 방과후코디 070-4268-1682, 12:30~16:30

★ 매일 학교종이앱으로 수강 과목 신청을 받습니다.

○ 방과후학교 방학 안내

방학기간				비고
1학기		2학기		
여름방학	2021. 7. 26.~27.(2일)	겨울방학	2021. 12. 27.~28.(2일)	

○ 환불 규정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코로나19 확산으로 방과후학교 미운영 시	○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 환불하지 않음

7.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 학기 중

유형	시간	기간	장소	대상	인원	비용부담	비고
오후 돌봄	13:00 ~17:00	주 5회	돌봄 교실 (2실)	1~2학년 중 저소득층·한부모 맞벌이가정 등	46명 이내	간식 수익자 부담 (교육비지원대상자 무료)	직영

○ 방학 중

유형	시간	기간	장소	대상	인원	비용부담	비고
오전, 오후	8:30 ~12:30 또는 08:30~ 17:00	주 5회	돌봄 교실	학기 중 돌봄교실 이용 학생 중 신청자	46명 이내	간식, 중식비 수익자 부담 (교육비지원대상자 무료)	직영

○ 돌봄교실 방학 안내

방학기간				비고
1학기		2학기		
여름방학	2021. 7. 26.~27.(2일)	겨울방학	2021. 12. 27.(1일)	운영시간, 비용,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사항은 수요 조사 및 학교협의 후 안내
		학기말방학	2022. 2. 28.(1일)	

○ 환불 규정

구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급간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급간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급간식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본인의 의사로 돌봄교실 참여를 포기한 경우	돌봄 급간식 취소를 주말 제외한 3일 전에 돌봄전담사에게 미리 알린 경우	해당 날의 급간식비 환불.
	돌봄 급간식 취소를 주말 제외한 3일 전에 돌봄 전담사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반환하지 않음.

※ 돌봄교실 및 방과후 연간 운영계획 및 프로그램별 월간 운영계획은 홈페이지 - 방과후학교 - 공지사항과 부서별 프로그램 게시판에 탑재

8. 학부모회 조직 운영 계획

가. 2021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현황

구 분	인 원	성 명	자 녀
회 장	1명	김권혁	4-1 최O희
부회장	4명	고은선 박영희 이효진 양정윤	1-2 김O랑, 5-2 김O율 2-1 강O주 4-1 이O슬 1-1 한O원, 3-2 한O은 6-2 한O경
간사	1명	윤정은	3-1 주O양

나. 기능별 학부모회

구 분	활 동 내 용	인원
학부모 교통안전도우미	○ 아침 등교길 교통봉사활동 -오전 8:10-8:50(40분) 4인 1조 편성운영, 22.2.8~11(총 4일간) -학년군별 1일 운영, 학부모교통안전도우미 임원 봉사(1일)	5명
학부모 도서 도우미	○ 학교도서관 사서도우미 활동 -화,수,목요일 오전, 본관 3층 도서관	2명
학습준비물 학부모 도우미	○ 학습준비물실 관리 및 학습준비물 대여 봉사 -코로나 상황 안정시, 오전 9:00~12:00, 후관3층 학습준비물실	4명

2021 학년도

선택과 집중으로 자존감을 높여가는

진북초등학교 학부모 연수자료



※ 생활규정, 학교규칙, 출결관련 자료 등 학교 생활에 관련 자료는
본교 누리집의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전주진북초등학교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안내

우리사회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사립학교교직원·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제공받은 교사는 물론 제공한 학부모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학교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여러 차례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의 명예 실추는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학교 및 교사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학교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학교에서는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일체의 불법찬조금을 접수하지 않고 있으니 학부모님들께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적발 시 반드시 신고하시어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과 신뢰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2. 교육활동 침해예방 학부모 연수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I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전라북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II 교육활동의 침해란?

소속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 폭행 및 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1항에 의한 성범죄(교원지위법 제1항 제2호)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유통(교원지위법 제1항 제3호),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온라인 원격수업 시 발생 가능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교사의 강의 내용 등에 대하여 단독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에 대한 욕설 행위
- 출석 확인 및 피드백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 수업 영상을 위·변조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행위
-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
- 그 밖의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수업 동영상을 무단으로 캡처하거나 영상을 유출하는 행위는 교사의 소중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III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

-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 조치**
- (침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 특별휴가(법제14조의3)(「교원지위법」 제15조제2항)

IV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활용, 학부모회 참여, 학급소통방, 각종 연수 및 공개수업 참여 등.
- 학부모의 방문 절차

■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하기 ■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안전과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 상담주간 이외의 학교 방문’ 시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 8) 학부모님의 학교 방문도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V 학부모님 협조사항

- 교육활동 및 원격수업 관련 상담은 가급적 **근무시간 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 수업 및 평가 내용 등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한 요구나 간섭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할 경우 자녀의 시간표와 학사 일정을 참조하여 수업 시간 외의 시간 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인권’ 과 ‘교권’ 이라고 하는 두 개념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권리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언제든지 학부모님과 상담하여 소통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도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꽃피는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2014.3.11.제정, 2014.9.13.시행)’의 약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중·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 학교 안에서의 선행교육 규제, 학원의 선행학습 확산 방지 →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교육 →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얇의 즐거움을 느끼며 행복한 학습활동 →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전인교육 완성

2 선행학습의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한(2020.3.10.)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4. 학부모 대상 생활 인성교육

1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은 범죄”입니다.

학교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범죄행위**입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2. 학교폭력의 유형

언어폭력, 신체폭력, 위협 및 협박, 괴롭힘,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성폭력, 폭력 씨클 가입유도, 강제적인 심부름 등을 말합니다.

3. 부모가 알 수 있는 학교폭력의 징후

피해학생의 징후	가해학생의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이 아프다며 학교가기를 싫어하거나 지각이나 조퇴가 잦아진다. ▶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간다. ▶ 멍자국이 있어 물어보면 그냥 다쳤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피한다. ▶ 운동화, 휴대폰, MP3, 옷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르며,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 웃음이 없어지고 풀이 죽어서 맥없이 있거나 방에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는다. ▶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한다. ▶ 이유 없이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다. ▶ 엄마나 동생 등 만만한 대상에게 폭력을 쓰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물어보면 친구에게 받았다고 한다. ▶ 갑자기 돈 씹씹이가 커졌다. ▶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 부모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비밀이 많고 대화를 잘 하지 않는다. ▶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외출이 잦아진다.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 작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 등하교 시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 ▶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 ▶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 ▶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 역지사지,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인식 시킵니다.
- ▶ 자녀에게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친구**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 ▶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과 협의 하여 공동 지도하도록 합니다.
- ▶ 자녀에게 **모범된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 ▶ 평소에 모욕적인 말투를 쓰는 자녀, 잘난 체 하는 행동의 자녀, 유별난 복장을 하는 자녀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합니다.

5.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예방 교육, 성교육 활동 강화
- 안전강화학교 지킴이 : 학교 교문 옆 경비실에서 학교 출입 외부인 통제
- 행정실 CCTV 모니터링
- 각 학급 담임 교사들의 면밀한 관찰, 수시 상담, 가정과 연계 지도

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 행복한 가정, 행복한 아동

▶ 가정폭력 예방 교육

1. 가정폭력이란?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사자명예훼손, 모욕,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2. 가해자

-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3.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4.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고 집안일이다?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주로 아내이고, 일방적인 폭력행위를 사랑싸움으로만 볼 수 없으며,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음성화된 폭력이 향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대대로 전승될 수 있는 등 인권침해의 악순환 과정을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5. 가정폭력 신고처벌근거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요

-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 교육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 아동학대의 유형별 징후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등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를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귀가에 대한 두려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장애 • 신체발달 저하 • 언어장애 • 원형탈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성인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흉진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입천장의 손상, 성병감염 및 임신, 인두염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수명장애(유뇨증, 유분증) 섭식장애(폭식증, 거식증) •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 비행, 가출, 자기 파괴적 행동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지연, 발달지체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 냄새나는 의복,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지속적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을 구걸 •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아 동 학 대 신고 전화

☎ 112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고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복지법)

4. 아동학대 신고요령

1 STEP

-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기
- 아동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 학대피해 아동이 더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기
- 학대휴유증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하고 이를 기록하기

2 STEP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아동을 안정시키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3 STEP

-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시 적극 협조하기
- 피해아동 및 가정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 보호중인 피해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 요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 취하기
-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기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아동복지법 제 25조 3항에 의거하여 공개되지 않습니다.

3 아이의 인권보호, 이해와 공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를 한 명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식한다

1. 아이들이 찾아온 손님이라고 생각합시다.

집에 찾아온 손님이 우유 잔을 엎질렀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먼저 “괜찮습니다. 제가 치우도록 하죠.” 혹은 “컵이 엎질러졌군요. 저기 휴지가 있어요.”라고 이야기 해줄 뿐이다. 손님의 부주의를 탓하거나, 손님에게 훈계를 늘어놓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이들에게만은 이런 양해와 존중, 그리고 정중함을 갖지 않는다. 실제로 예절바른 사람도 아이들 앞에서는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사람이 되고 만다.

또한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명령을 무시 할 때 심한 모욕감을 가지게 되

는데 이러한 것도 아이들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어린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아이들을 존중하고 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을 찾아온 귀한 손님이 라 생각하고 존중해 보자.

2. 비난과 욕설, 위협과 명령을 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줄뿐이다. 우리는 아이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태도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경고, 비교 등의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경고, 비교 등의 말에 대해서 소극적인 성격이 되거나 편애한다고 느끼거나 자신감을 잃고 겁을 먹는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효과적인 것은 정확하고 짧게 문제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다.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1. 주의 깊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말들은 그 내용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는 중요한 생각이나 의견이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사소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스스로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기를 배우고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태도를 기르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가 말을 걸어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아주 바쁜 상황이라면 아이에게 충분히 바쁜 상황임을 이해시키고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을 마련한다.

2. “오~”, “음~”, “그래”와 같은 반응으로 아이들의 말을 인정해 줍니다.

질문과 충고를 하기보다는 아이의 이야기에 대해 호응하는 간단한 반응만을 보임으로써 아이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캐묻는 것과 장황한 충고를 받기 위해서 교사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질문과 충고를 할수록 아이의 말은 점점 줄어들고, 아이의 말을 잘 들어 줄수록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아이는 더욱 잘 표현하게 된다.

3. 아이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한다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아이들이 즐겁거나 기쁜 상황에서의 이야기들은 부모가 그것 자체로 받아주면 상관없

지만, 아이들이 슬픔이나 분노 등의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들에 대해서 교사나 부모들은 “다 큰놈이 훌쩍거리긴!”, “어린애처럼 그게 뭐니?”,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 괜히 울지 마라.” 라는 식으로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교사나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분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면서 그 감정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속상했겠구나!”, “ 창피를 당해서 화가 났겠구나!”, “친구와 헤어지는 일은 참 슬픈 일이야.” 등으로 공감하는 표현을 해준다. 아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에도 안도감을 느낀다.

4. 모든 감정은 수용될 수 있지만 행동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아이가 “그 녀석 죽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 한다고 “정말 죽이고 싶겠구나.” 혹은 “난 동수 녀석 한 대 쥐어박고 말거야.”라고 한다고 “그래”라고 반응을 보이려는 건 아니다. 아이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 아이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권 교육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5. 아이들의 격심한 감정 반응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처합니다.

상황에 따라 아이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에는 어떠한 말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계속 흐느끼는 아이나 난폭하게 행동하는 아이에게는 아이의 감정이 정리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이 서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함부로 나무라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아이들이 스스로 비난하는 것에 동조도 거부도 하지 않습니다.

간혹 아이들은 스스로를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아이의 말 그대로 “너는 너를 바보같이 느끼는구나.” 등으로 동조하거나 “그럴지 않단다.”라는 말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의 감정 상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4 천하보다 귀한 생명 - 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

1. 자녀 자살 예방 7계명 *

- ① 진심어린 사랑으로 자녀를 대한다.
- ② 자녀의 장점과 강점을 부각시킨다.
- ③ 자녀와의 면담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
- ④ 자녀의 말을 잘 경청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한다.
- ⑤ 자녀 지도 시 자존심 손상이나 인격적 모욕감이 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자살위험이 높은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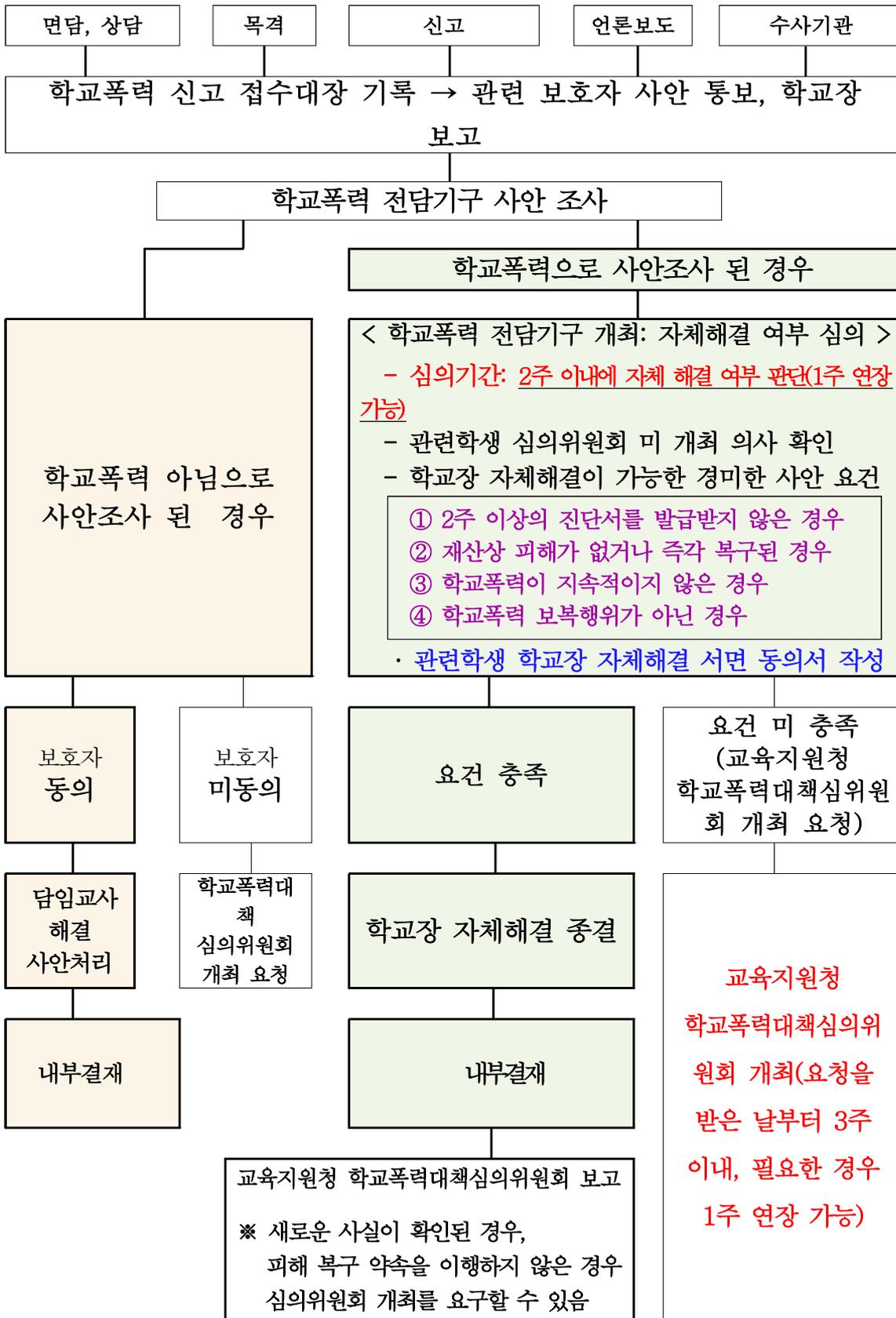
2. 자살에 대한 잘못된 상식(오해)과 진실

- 오해 1 : 자살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나 단서도 없이 자살한다.(☞ NO!)
- 진실 1 : 10명 중 8명은 그들의 자살의도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들이 무슨 뜻이며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한다면, 그들의 자살 의도를 알 수 있다.
- 오해 2 :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하지 않을 것이다.(☞ NO!)
- 진실 2 : 자살 생각이나 자살 기도는 '도움을 찾는 외침'이다. 이 외침에 반응이 없으면 주목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시도하여 비극적인 결과로 끝맺을 수 있다.
- 오해 3 : 특별한 유형의 사람들만이 자살을 기도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혹은 자살생각을 한다.(☞ NO!)
- 진실 3 : 자살 생각, 감정, 행동들은 모든 사회 계층, 종교집단, 연령층 혹은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 오해 4 : 자살은 유전된다.(☞ NO!)
- 진실 4 : 자살자의 다른 가족이 자살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유전적이기보다는 다른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

3. 자살의 단서(위험 경고)

구 분		단 서
언어적 단서	직접적 암시	“나는 죽고 싶다 “나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
	간접적 암시	“내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나아”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행동적 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랫동안 여행을 떠날 것처럼 주변을 정리 정돈한다. ▪ 유서를 써 놓는다. ▪ 평소에 아끼던 물건들을 친구들에게 나눠준다. ▪ 알코올이나 약물남용이 심해진다. ▪ 전에 좋아하던 활동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 학교에서 불안해하며 공부를 제대로 못 한다.
육체적, 정서적 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 관계에 소홀해진다. ▪ 식욕부진 ▪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잔다. ▪ 외적 용모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 대부분의 증상이 우울증의 증상과 비슷하다.

5 법률 개정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5. [사이버]학교폭력 (성폭력 포함) 예방교육 안내

학생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보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및 게임, 도박 등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정에서 유의해야 할 생활교육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 대상 온라인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연수 안내

- 학부모 학교폭력예방 교육<학기당 1회> 코로나 19에 의하여 사이버연수 권장
 - 수료증발급을 원하는 경우: 매달 1일 ~ 15일 수강 신청 후 수강
 - 수료증발급이 없이 청강을 원하는 경우: 수시 수강 가능
- 사이버연수 수강 방법(무료 수강, 1차시당 15분 소요)
 - 학부모On누리 누리집(www.parents.go.kr) 접속
 - 회원가입(수료증발급을 원하실 경우에만 필요)
 - 학습마당/ 수강신청 클릭
 - 수강 내용 시청
 -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5차시 중 1차시 이상)
 - 자녀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수강(5차시 중 1차시 이상)

[온라인 개학에 따른 (사이버)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 학생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정하고 학부모님이 함께 행동하기
2. 담임교사의 상담을 통해 온라인 수업 시간을 숙지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자녀와 의논하기
3.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학습 목적 외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기
4.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와의 댓글이나 대화 시 즉흥적으로 욕이나 불건전한 내용의 글을 쓰지 않고 바른말을 쓰도록 교육하기
5. 학생들이 게임이나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관심 가져주기

[학교폭력 신고방법]

1. 학교의 담임교사나 학교폭력예방 담당교사, 그 외 교사에게 말하기
2.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전화하기: 112(범죄신고), 117(학교폭력신고센터), 1388(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588-9128(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6. 보건교육 학부모 연수자료

1 학부모 성폭력예방 교육자료

가. 가정에서의 성폭력 예방 방법

1) 성폭력 예방을 위해 자녀와의 대화하기

- 일상생활에서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 평소 자녀의 학교생활 등 일상에 관심을 갖고 자녀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 가정, 학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들을 준수하도록 지도합니다.
- 부담스러운 주제라며 대화를 피하지 마세요.
- 성과 성폭력을 주제로 자녀와의 소통을 시도해 보세요.

2) 성폭력에 대한 통념 버리기

-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 NO! 87.6%는 아는 사람, 어린이와 유아의 경우 친족에 의한 피해가 각각 45.2%, 72.7%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 NO!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하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이 어렵습니다.
- 가해자는 장난인데 억울하다?
➔ NO!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가해자의 의도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 NO! 피해자가 가해자를 따라 갔다고 해서,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의 책임은 오직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2019년 상담통계자료)

나. 성폭력 피해 시 대처 요령

1) 성폭력 피해 징후

신체적 징후	심리적 징후	성적 행동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 밥을 먹지 않거나 갑자기 밥이나 다른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다. • 생식기 통증을 호소한다. • 손을 자주 씻는 등 청결에 대한 강박감을 행동으로 보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몽을 꾸거나 불안 증세를 보인다. • 평소보다 시무룩하거나 이유 없이 짜증을 낸다. • 특정 인물, 장소, 물건에 대한 거부 및 공포감을 나타낸다. • 낮에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행동이나 성행위를 흉내 낸다. • 성기나 성행위 등에 과도한 호기심을 보인다. • 음란물에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

※ 모든 성폭력 피해 어린이에게 피해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상처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2) 성폭력 피해 자녀, 부모님의 대처 방법

-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 주고, 믿어 주고, 감싸 주고, 보호해 줍니다.
-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아이의 표정, 행동 등을 관심 있게 봐주세요.
- 발생 장소, 날짜, 시간, 가해자의 얼굴과 옷차림 등 자녀가 한 말을 그대로 기록해 둡니다.
- 성폭력은 자녀의 잘못이 아니며, 성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말해줍니다.
- 부모가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자녀와 성에 관한 대화 방법

- 텔레비전 뉴스나 드라마 등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를 찾습니다.
- 부모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자녀의 생각을 듣고 소통하도록 합니다.
- 성 문제에 관한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녀에게 말할 때는 하나의 주제만으로 이야기합니다.
- 자녀를 지나치게 어린아이 대하듯 말하지 않습니다.

TIP, 꼭! 알아 두세요!

- ONE-STOP지원센터(☎117,전북대학교병원 내) • 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 학교폭력SOS지원단(☎1588-7179) •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www.sexoffender.go.kr)
- 해바라기아동센터(<http://www.gwsunflower.or.kr>)

다. 학교에서의 성교육

학교에서는 국가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을 준수하여 담임교사에 의한 관련교과 성교육, 보건교사에 의한 창체 활용 성교육 등 학년별 연 15시간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함)을 실시합니다.

라. 전라북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신고센터 운영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

2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활용 안내

「스마트폰 설치 및 이용방법」



① 앱스토어에서 '성범죄자 알림e' 앱 검색

② 본인인증

③ 지도검색

④ 성범죄자 확인

- 조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성명, 사진, 나이, 신체정보, 실제거주지, 전자장치 등
- 알림기능으로 설정: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거주하는 성 범죄자를 음성과 메시지로 제공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정시간 : 1시간, 12시간, 24시간, 미설정
- 조건검색을 통해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하여 알게 된 각 성범죄자의 인적사항을 공유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등에 의거 금지 (다만, 학생의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 알림e' 웹사이트 안내 및 조회방법 전달, 홍보는 가능)

3 학부모 흡연예방교육

매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청소년 온라인건강행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 중 흡연시작 연령이 12.7세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 흡연 진입을 차단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자녀에게 흡연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가. 어린 나이의 흡연은 훨씬 더 해롭다.

- 어릴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심신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담배 속 온갖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중독이 심해지고 신체발달(특히 폐의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기의 흡연습관은 성인기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니코틴 의존에서 더 나아가 알코올(술)이나 다른 의존성 약물에 중독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 부모의 흡연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부모의 흡연은 흡연에 대한 자녀의 인식과 행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친구와 가족의 흡연이 흡연욕구를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요인
- 이므로 비흡연 청소년 앞에서 부모를 비롯한 가족과 친구는 흡연의 자제가 필요합니다.

❖ 전국 보건소 무료 금연클리닉 운영 :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

❖ 금연 상담 전화 : 1544-9030 금연콜센터

❖ 금연 길라잡이 : <http://www.nosmokeguide.or.kr> 다양한 금연 정보와 금연 관리를 제공

다. 담배회사의 주 고객은 10대

평생 흡연 가능 기간이 짧은 성인보다 그 기간이 긴 청소년은 주요 마케팅 대상이 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담배회사의 대표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편의점 계산대 주변 혹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간식거리 옆에 담배광고물을 설치하고 또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이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가.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 확인하기

- 1) 에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
- 2) 스마트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 설치: 우리동네 및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확인

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행동요령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 2)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 권고
- 3)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 5)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5 학부모 감염병 예방교육

☞ 학교는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으로 한 명의 감염병 환자 발생으로도 집단 유행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본인 건강은 물론 함께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 단체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본 개인 위생수칙

- 수시로 손을 씻고, 오염된 손으로 코나 눈,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호흡기 분비물로 오염된 손을 깨끗이 씻고, 오염된 물건은 소독하거나 비눗물로 씻어서 사용합니다.

나.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학생에게 자주 발생하는 주요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이 됩니다. 이들 질병은 다른 학생에게 전염이 되므로 반드시 등교중지를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감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학부모님께서선 접종을 완료해 주시고 만약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면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등교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등교중지 대상자 : 법정감염병 환자, 법정 감염병 의심자,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다. 등교중지 방법

- 1)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연락한 후 병원에 갑니다.
- 2)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이 나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하시고 격리 치료를 합니다.
- 3) 치료, 완치 후 병원에서 확인 받은 의사의 진료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1부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서류 상 병명 및 기간과 등교중지기간이 일치해야 합니다.

라. 유의사항

- 의심 학생은 확진 여부 판정 시까지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으로 처리됩니다.
- 완치되어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중지합니다.
(감염병 등교중지 기간보다 미리 등교 시에는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함)
- 등교 시 학생은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부)를 학교로 제출
- 소견서 내 치료기간 동안은 학교에 나오면 안 되며, 학원도 가지 않도록 함

마. 학교에서 자주 발생 하는 감염병

병명	병원체	감염경로	전염 가능 기간 (등교중지 기간 참고)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두분비물, 객담→비말감염	해열 후 2일 경과까지
수두	수두바이러스	인두분비물→비말감염	모든 발진이 딱지가 앉을 때까지(약 7일)
유행성 이하선염	멤프스바이러스	타액→비말감염	증상발현 후 5일까지(이하선종창 소실일까지)
풍진	풍진바이러스	인두분비물→비말감염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발진 소실일까지)
유행성 각결막염	아데노바이러스	눈곱, 분변→접촉감염	주요 증상 소실 후 2일 경과까지
성홍열	A군B군용혈성 연쇄상구균	인두분비물→비말감염	치료 시작하고 24시간까지
홍역	홍역바이러스	인두분비물→비말감염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해열 후 3일 경과까지)

6 코로나19 감염 예방 안내

☞ 2020년 1월 코로나19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후 현재 누적환자가 94,000여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계속 등교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진북 교육 가족 한 명 한 명의 학교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되는 거리두기로 지치고 힘들겠지만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감염이 학교에 전파되지 않도록 보호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코로나19 예방 핵심 개인방역 수칙

<p>제 1 수칙) 모든 실내 및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2m 이상)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합니다.</p> <p>(이유)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음식 섭취, 격렬한 운동 등)은 가급적 피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가능한 실외공간을 활용합니다. - 밀폐·밀집·밀접한 장소에서 모임, 불필요한 외출 및 타지역으로 여행은 자제합니다.
<p>제 2 수칙)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p> <p>(이유)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 +120)나 보건소(281-6341~4)에 문의하여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고 집에서 쉬니다.

제 3 수칙)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립니다.”
<p>(이유) 오염된 손을 거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기침 예절을 지켜 침방울을 통한 전파도 최소화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 만나는 사람과 신체접촉(악수 혹은 포옹 등)을 하지 않습니다.
제 4 수칙)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p>(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환기를 통해 낮출 수 있고,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묻을 수 있는 표면을 소독하면 손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항상 열어두거나, 계속 환기가 어려운 경우 주기적으로 (오전·오후 각 2회 이상) 환기합니다.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 환기는 필요합니다. - 손이 자주 닿는 표면(전화기, 리모컨,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과 공용물건(카트 손잡이 등)은 매일 최소 1회 이상 소독합니다.
제 5 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합니다.”
<p>(이유) 코로나19는 혼자서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고 영상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 할 기회를 만듭니다. - 코로나19 환자, 격리자가 사회적 낙인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나. 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출석인정) 대상자(2021.3.9. 안내문 참조)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메세지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참조)	증상 발현 시부터 “약 복용 없이”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p>[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문자메세지 통지 사본 등) • 보호자확인서(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p>※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감염병이 아니라는 의사소견서 제출 후 등교가능 	<p>등</p> <p>[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문의 결과 가정에서 요양하며 증상 관찰하거나 가까운 병원진료를 권유받은 경우 • 보호자확인서(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p>등</p>
<p>기저질환 및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저질환: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장애: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 ■ 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u>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u> ■ 질병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관심'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을 한 경우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십시오(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다. 학교 방역수칙 협조 사항

1) 일상생활 속에서도 함께 방역수칙 준수

-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로 전파되지 않도록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 방역 수칙 준수 철저
-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및 손소독, 아프면 쉬기, 불필요한 여행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거리두기 준수

2) 등교 전 자녀 건강상태 매일 체크 하기

-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코로나19 진단검사·자가격리 여부(동거가족 포함)

☞ **코로나19 임상증상 중 하나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3) 등교시, 학교생활 중 상시 마스크 착용

4)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물품 사용하도록 준비

5) 외부인 출입통제 협조

- 방문객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출입을 금지
- 부득이하게 출입할 경우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검사, 출입명부 작성 등 절차 준수

6)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처리 절차

- 가) 집에서 증상을 발견한 경우

- 등교중지하고 담임선생님에게 유선으로 알림(자가진단앱에 유증상으로 표시).
- 나) 학교에서 증상을 발견한 경우
 - 보호자에게 연락을 드리고, 일시관찰실 대기 후 보호자 인계
 - 지체없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유지

■ 코로나19 임상증상자 관리 원칙

- ① 등교중지(출석인정)하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
- ②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가능한 개인차량 이용 및 마스크 착용)
 - ☞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학교에 알림
- ③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약 복용없이) 증상이 호전(소멸)되면 다음 날 등교(담임교사 알림)
 - ☞ 귀가 후 3~4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예시) 해열제를 복용하여 6.7.(일)에 열이 내려가고, 6.8.(월) 등교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가능
 - ☞ 등교시 의사소견서, 보호자확인서(학교홈피 등교중지안내문 게시) 등 제출

7. 저작권 교육 학부모 연수

☐ 저작물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이어야 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밖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아이디어·절차·방법·시스템·개념·원리·발견·장치·원칙·이론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 저작권

저작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이며,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되는 때에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한다.

가.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명예나 성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작자나 창작자에게 부여된 권리이고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이고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저작권 이용 허락

공익 목적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저작재산권의 제한 범위를 벗어난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개별 저작권자에게 받는 것이 원칙이나 개별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신탁하거나 위임한 때에는 해당 신탁단체나 업체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저작권 보호기간

가. 일반적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그의 사망 후 70년간이고 무명(無名)으로 공표되거나 실명(實名)이 아닌 이명(異名)으로 공표된 저작물, 영상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은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간 보호

나. 한, 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2013년 7월 1일부터 보호기간이 20년 연장

다. 실연(實演)은 실연한 때로부터 70년, 음반은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간 보호

라. 보호기간의 기산(起算)은 사망 또는 공표한 때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

☐ 법적책임 및 분쟁해결

가. 민사책임: 피해자는 침해예방청구권, 침해정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음

*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

나. 형사책임: 법 질서 위반에 따른 사회적 책임, 징역이나 벌금

1) 저작권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서 소추가 가능한 친고죄(親告罪)가 원칙

2)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작권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도 소추가 가능한 비친고죄

3)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 저작인격권 침해죄의 공소시효는 5년

다. 분쟁 해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8. 정보통신 윤리교육 학부모 연수

자녀에게 말해주어야 할 인터넷 이용 수칙

- 가. 부모의 허락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절대로 직접 만나면 안 된다.
- 나. 부모의 허락 없이 부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정보나 사이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 다.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나 행선지 그리고 현재의 소재지 등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라. 인터넷상에서는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교이름, 비밀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부모의 허락 없이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 마. 폭력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의 전자우편이나 의심스러운 제의 등에 대해서는 일체 답장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자녀에게 개인정보의 소중함 일깨워주기

- 가. 자신의 ID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ID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나. 개인 정보는 개인의 매우 중요한 정보 재산이므로 소중하게 취급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 다.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에 자리를 일시적으로 비울 경우를 대비하여 암호화된 화면보호기를 설정한다.
- 라. 전자 상거래 정보 및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 기업 및 상대 사이트의 이용약관이나 개인 정보 보호 방침 등을 반드시 읽어보고 개인 정보 관리 정책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가르친다.

우리아이 인터넷 예절 키우기

- 가. 자녀들과 함께 적절한 사용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 나. 컴퓨터는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놓아라. 자녀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게 되어 보다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을 유도함은 물론, 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 다.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져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태 모두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 라. 신상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시켜라. 인터넷상의 낯선 자에게 집 주소나 학교명, 전화번호 등 사적인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중독 예방 생활지도

-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및 게임시간 선택제 활용

※활용방법 : 게임문화재단([www. gamecheck.org](http://www.gamecheck.org))에서 학생의 게임이용 실태 파악학생과 올바른 게임이용을 위한 활용계획 수립(게임 이용시간, 게임종류)→게임사이트 방문하여 게임시간선택제 이용신청→게임회사는 학생에게 사실 확인 후 게임시간 제한